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산세 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최장훈 연구위원

-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실시한 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을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하여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임.
 - 개편안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이중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조세인 재산세와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합한 체감재산세는 재산세보다 과중한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는 재산 과표 3억 원 기준 시 재산세의 약 3.6배이며, 과표 5억 원 기준 시 재산세의 약 2.3배로 나타남.
- 부과체계가 개편되어도 재산 과표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가 실제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될 것임.
 - 재산 과표 3억 원의 경우 재산세 대비 체감재산세는 3.6배에서 3.4배로, 재산 과표 5억 원의 경우 체감재산세가 2.3배에서 2.2배로 감소하는 것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제고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향후 복지부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납부자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임.

1. 검토 배경



■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안을 추진함.

-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한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¹⁾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됨.²⁾
-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4년간 실시한 후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실시할 계획임.
 - 당초 3단계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야 합의로 2단계 계획으로 단순화함.

■ 본고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조세인 재산세를 합하여 체감재산세라 칭하고 금번 개선안이 재산세 체감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료(준조세)나 재산세(조세)는 모두 강제적인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체감재산세라는 개념에서 평가하고자 함.

2.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체계 개편



■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의 재산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 사회보험 방식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이나 국가단일 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는

1) 연소득 50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소득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재산보험료를 산출하는 이중 부과 문제도 있었음. 금번 개편안은 이 문제를 최저보험료로 흡수하였음.

2) 소득(금융, 연금, 근로+기타) 기준으로 어느 하나라도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이 과표기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자격을 인정함.

대만의 경우도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함.³⁾

– 일본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독립된 지역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고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3가지의 부과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⁴⁾

● 우리나라에서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⁵⁾을 재산 가치를 활용해서 보완하기 위한 것임.

– 2016년 야3당(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은 모두 소득에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자는 개선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표 1〉 재산, 자동차 관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

주요 부과기준	현재	개편안	
		1단계	2단계
재산 보험료	공제 없음	500~1,200만 원 공제	5,000만 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모든 자동차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주: 보건복지부(2017.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최근 여야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함.

■ 금번 부과체계 개편안은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하여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중 부과체계는 존속시킴(〈표 1〉 참조).

● 재산과 관련해서는 과표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재산 보험료를 산출함으로써 과표 5천만 원 미만의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시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소형 차량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반면 2022년 개편안의 최종 단계(2단계)가 실시되어도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는 기본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징수여건이 유사한 직군이나 지역별로 독립적인 공공 건강보험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사회보험 방식이라 칭함.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 국가가 단일 사회보험 체제를 구축한 경우이며, 이를 국가보험 방식이라 칭함.

4) 지역별 건강보험조합은 소득, 자산, 피보험자균등, 세대평등 등 다양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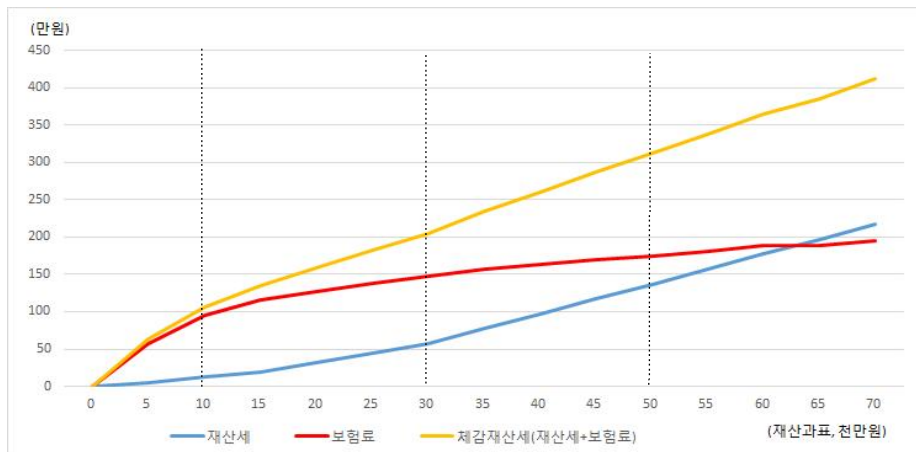
5) 소득이 정확하게 조세당국에 신고 되는 비율임.

3.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에 미치는 영향



- 본장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자산기준 건강보험료가 재산세의 체감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그림 1〉 현행 체감재산세



- 현행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감재산세 부담이 재산세에 비해 크게 과중한 수준에 있음 (〈그림 1〉 참조).

- 재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이므로 재산 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폭이 커지는 누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재산 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감소하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역진성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의료비 보장이라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사회연대 차원에서 비용을 분담⁶⁾하기 때문임.
- 동일한 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 부담은 재산세보다 훨씬 과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조세와 준조세를 합한 체감재산세는 재산 과표 3억 원 기준 시 재산세의 약 3.6배, 과표 5억

6) 사회적 연대 차원의 비용 분담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부담여력에 따라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이상의 부담 여력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님.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중의 부담을 요구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와는 분담구조가 다름.

원 기준 시 재산세의 2.3배로 나타남(〈표 2〉 참조).

〈표 2〉 개편 후 체감재산세(주택 기준) 변화 추정

(단위: 만 원/년, 배수)

재산 과표		5천만 원	1억 원	3억 원	5억 원	7억 원
재산세(A)		5.0	12.0	57.0	137.0	217.0
건강 보험료	현행(B)	57.8	94.6	146.8	175.0	195.0
	개편 후(C)	0.0	57.8	137.3	169.2	188.1
체감 재산세	현행(A+B) ((A+B)/A)	62.8 (12.6)	106.6 (8.9)	203.8 (3.6)	312.0 (2.3)	412.0 (1.9)
	개편 후(A+C) ((A+C)/A)	5.0 (1.0)	69.8 (5.8)	194.3 (3.4)	306.2 (2.2)	405.1 (1.9)
	차이 (B-C)	57.8	36.8	9.5	5.8	6.9

■ 부과체계가 개편되어도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가 실제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될 것임(〈표 2〉 참조).

-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재산 과표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과표가 매우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와 체감재산세가 크게 감소함.
 - 예를 들어 재산 과표가 5천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체감재산세는 12.6 배에서 1배로 크게 하락하며, 재산 과표가 1억 원인 경우는 8.9 배에서 5.8배로 하락함.
- 그러나 나머지 재산 과표 구간에서는 5천만 원 공제가 체감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 과표 3억 원인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는 개편 후 연 9.5만 원 가량 감소하여 재산세 대비 부담 규모도 3.6배에서 3.4배로 큰 차이가 없음.
 - 재산 과표 5억 원인 경우도 체감재산세는 연 5.8만 원 가량 감소하며, 재산세 대비 부담 규모도 2.3배에서 2.2배로 큰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부분의 재산 과표 구간에서 체감재산세가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4. 제언



- 정부는 국민 부담의 왜곡을 초래하는 재산 보험료를 유지하기 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은퇴자 포함)는 동일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체감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음.
 -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조세와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손쉽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⁷⁾
-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개선하여 소득으로 부과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의 왜곡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되 소득의 종류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일부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향후 복지부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임.
- 징수자의 입장에서 조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다룰 경우, 이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부담 형평성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납부자인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어떠한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kiri](#)

7)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요율 변경이 가능함.